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3서식] <개정 2025. 4. 18.>

소득·재산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성명[1]						
소득사항	보훈급여금 등 (간호·조정수당 제외)		담당 공무원 기재			
	재산소득	임대소득	원	원	원	원
		이자소득	자산 조회결과 적용			
		연금소득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	
	근로소득	상시근로	원	원	원	원
		일용근로	원	원	원	원
	사업소득	농업소득 (주재배작물명)	원 ( )	원 ( )	원 ( )	원 ( )
		임업소득	원	원	원	원
		어업소득	원	원	원	원
		기타(자영업)	원	원	원	원
	기타소득	사적이전소득 (무료임대)	원	원	원	원
		공적이전소득[2]	자산 조회결과 적용			
		기타 (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)	원	원	원	원

재산사항	건축물 (주택, 건물, 시설물)	자산 조회결과 적용	토지	자산 조회결과 적용
	선 박	자산 조회결과 적용	임목재산	자산 조회결과 적용
	항공기	자산 조회결과 적용	어업권	자산 조회결과 적용
	자동차	차량명( ), 용도 [ ] 생업용 [ ] 보철용 [ ] 자가용		
	임차보증금	전·월세보증금(백만원), 상가보증금(백만원), 기타(백만원)		
	금융재산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
	동 산	소(마리, 원),돼지(마리, 원)	분양권	원
		기타가축(마리, 원),종묘(원)	조합원입주권	원
		기계·기구류(원),기타(원)	회원권	자산 조회결과 적용

부채	금융기관 대출금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	원
	임대보증금	원		
	공증사채	판결문, 화해,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(원)		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7제1항·제7조의10제1항·제3항·제8조의4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·제10조제1항·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·제8조의3제1항·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귀하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비고

1. 별지 제8호의2서식, 별지 제8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중 소득·재산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, 대상자가 4명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.
2. "공적이전소득"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